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3가합64346 손해배상(기)
원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응원 담당변호사 조재우, 안성진
피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변론종결	2025. 1. 24.
판결선고	2025. 2. 14.

주 문

1.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6. 10.부터 2025. 2.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주식회사 A가, 80%는 피고 D가 각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 주식회사 B가, 15%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에게 93,92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56,0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124,0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이른바 ‘5대 법정 의무교육’에 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촉을 받아 원고들이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할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위촉계약 체결

1) 원고 B와 피고들은 2021. 5. 3. 피고들이 원고 B가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에 관한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주1>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 B에게 ‘비밀유지 서약서’와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밀유지 서약서

피고는 원고 B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위촉계약의 만료 및 해촉 시에도 2년간 원고 B의 영업비밀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유 등 어떠한 사유에서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에 위반하여 원고 B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정한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수강생 모집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인이 담당했던 제반 사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피고는 원고 B의 영업자 자격으로 원고 B의 명의로 기업 및 개인에게서 개인정보(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전화번호, 훈련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원고 B의 교육영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라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의 영업자 자격 및 원고 B의 명의로 기업 및 개인에게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의 훈련 목적으로 기업 및 개인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고 B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으며 원고 B의 훈련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원고 A와 피고들은 2021. 7. 1. 피고들이 원고 A가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에 관한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 A에게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비밀유지 서약서’라 한다).

다. 원고들의 피고들 해촉 및 피고들의 전직

원고들은 2022. 9. 30.경 피고들을 교육서비스 영업업무에서 해촉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E로 전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영업비밀 해당성

① 원고들의 고객사에 관한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등 고객정보(갑 제26호증의 1, 2), ② 원고들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법정교육 견적서에 담긴 교육종류, 단가, 인원, 공급가액 등의 정보(갑 제27호증의 2, 3)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각주2>

2) 영업비밀 침해행위

피고들은 이 사건 비밀유지 서약서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22. 8. 22.부터 2022. 9. 16.까지 원고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업비밀을 이메일을 통해 자신에게 전송하거나 E에 전송하고(갑 제5, 17호증) 원고들의 영업업무에서 해촉된 이후에도 이를 E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였다.<각주3>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영업비밀 해당성에 관하여

가) 고객사에 관한 고객정보 관련

고객사에 관한 고객정보는 피고들이 인터넷 검색, 개인적인 DB 구입, 전화 등에 의하여 스스로 취득한 정보로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정보는 다른 회사들도 이미 동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다른 회사들도 동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원고들이 영업에 유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밀로 표지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보안 설정도 없었으

므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고객사에 제공한 견적서에 담긴 정보 관련

원고들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법정교육 견적서의 가격정보 100원은 형식적 내용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보는 피고들이 인터넷 검색, 개인적인 DB 구입, 전화 등에 의하여 스스로 취득한 정보를 편의상 원고들에게 제공하고도 삭제하지 않고 남아 있던 자료로서 원고들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은 자료가 아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였다는 것인지를 전혀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

나아가 피고들은 E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E의 영업을 위해 위 정보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참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하고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되지만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는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267 판결 참조).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만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2019. 7. 9.부터 시행되는 2018.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로 관리”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20. 1. 9.자 2019마6016 결정 참조).

2) 고객사에 관한 고객정보(갑 제26호증의 1, 2)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고객사에 관한 고객정보(갑 제26호증의 1, 2)는 원고들이 Z<각주4>을 통해 구입하여 얻은 정보를 기초로 가공하여 보유하고 있던 정보로서, 피고들과 같은 영업사원에게 일정량씩 할당하였고 피고들은 ‘I’이라는 이름의 영업관리 프로그램 또는 LMS 홈페이지<각주5>를 통해 자신에게 할당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특이 사항을 ‘I’의 메모란에 추가해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고객사에 관한 고객정보(갑 제26호증의 1, 2)는 피고들이 인터넷 검색, 개인적인 DB 구입, 전화 등에 의하여 스스로 취득한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11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정보는 피고들에 의해 생성된 정보가 아니라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친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하여 보유하고 있던 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갑 제26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고객사의 회사명, 사업자번호와 교육담당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은 원고들의 고객관리 프로그램(I 및 LMS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다. 반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 검색, 개인적인 DB 구입, 전화 등을 통해 위 정보를 새롭게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피고들이 제출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는 사업장명, 대표자명, 업종, 주소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였다는 DB 출력물에도 담당자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들과 같은 영업사원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원고들에게 ‘디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담당자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주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② 피고들은 원고들의 고객사에 관한 고객정보를 원고들의 업무용 컴퓨터에도 저장해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영업 활동 과정에서 고객사에 관한 고객정보(갑 제26호증의 1, 2) 중 일부를 새롭게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 이는 원고들과의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대신하여 원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영업 활동을 하던 중에 취득한 정보로서 원고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인 점, ㉡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와 같이 새롭게 취득한 정보를 ‘I’ 프로그램에 기재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정보로서 관리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새롭게 취득한 정보 또한 원고들이 보유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각주6>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고객사에 관한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등 고객정보(갑 제26호증의 1, 2)는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 외부에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담당자 개인의 인적사항(이름, 직함,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마케팅 활용, 이

메일 수신, 문자 수신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여부, 교육 접수 현황 내지 진행 정도 등 원고들의 교육 대상 사업장에 대한 영업상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이는 직접 그 사업장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않아 원고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위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경쟁업체보다 먼저 교육 대상 사업장의 교육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고 각 사업장의 교육 시기, 규모, 비용 등에 관하여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는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비밀유지 서약서,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를 받아왔고, 위 정보를 ‘I’ 프로그램 또는 LMS 홈페이지에 저장하여 관리하면서 피고들을 비롯한 영업사원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정보를 비밀로 표지하지 않았고 이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할 경우 보안을 설정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8.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비밀로 관리’될 것만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반드시 그 침해행위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보를 관리하여야만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고객사에 관한 고객정보(갑 제26호증의 1, 2)는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제1 영업비밀’이라 한다).

3) 고객사에 제공한 견적서에 담긴 정보(갑 제27호증의 2, 3)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고객사에 제공한 견적서에 담긴 정보(갑 제27호증의 2, 3)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이 작성한 ‘법정교육 견적서’(갑 제27호증의 2, 3)에는 교육별 단가와 인원수에 따른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비교란에는 직무인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교육비용의 교섭에 있어 중요한 영업상 정보로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원고들이 보유함으로써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제2 영업비밀’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영업비밀과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영업비밀’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법정교육의 단가로 기재되어 있는 ‘100원’은 직무교육과 함께 수강할 경우 사실상 무료로 법정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형식적인 것이므로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법정교육의 단가 역시 원고들의 영업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는 정보로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

갑 제5, 7, 17, 1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22. 8. 22.과 2022. 8. 25. ‘J’, ‘K’, ‘L’, ‘M’, ‘N’, ‘O’, ‘P’ 등 다수의 E 관련 문건을 E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2022. 9. 16. 자신의 네이버 계정으로 3건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해촉된 이후인 2022. 10. 4.과 2022. 10. 25., 2023. 1. 30.에 LMS 홈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사실, 피고 C는 2022. 10.경 원고들의 고객사들 일부와 연락하여 교육수강 기관을 E로 변경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 피고 D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경위 및 방법을 더하여 보면 피고 C가 이 사건 제1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가 이메일을 통해 전송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

인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피고 C가 2022. 8. 22.과 2022. 8. 25. 이메일로 전송한 E 관련 문건(갑 제5호증, 을 제7호증 참조)은 그 제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각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D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 17, 18, 22, 27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D는 2022. 9. 14. ‘G’ 파일을, 2022. 9. 16. ‘F’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자신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부터 2022. 9. 16.까지 다수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자신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 D가 전송한 위 ‘G’ 파일과 ‘F’ 파일에는 다수의 폴더와 엑셀, pdf, 워드, 한글 등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G’ 파일(을 제21호증)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을 통칭하여 ‘Q 파일’이라 하고, ‘F’ 파일(을 제20호증)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을 통칭하여 ‘R 파일’이라 한다].

Q 파일 중 ‘S’ 엑셀파일에는 이 사건 제1 영업비밀 중 피고 D가 담당한 회사들(갑 제26호증의 2 참조) 중에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90곳[= 원고 A의 고객사 67곳 + 원고 B의 고객사 24곳 중 T(갑 제26호증의 2 상단 표 순번 14)를 제외한 나머지 23곳]의 회사명, 주소, 담당자 인적사항(이름, 직함,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고, R 파일 중 ‘I’ 폴더에 포함되어 있는 엑셀파일과 ‘U’ 엑셀파일에도 위 90곳 중 일부의 회사명, 주소, 담당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R 파일 중 ‘2.업체관리’ 폴더에 포함되어 있는 엑셀파일은 원고들이 고객사에게 보낸 ‘법정교육 견적서’로서, 직무교육의 단가와 인원에 따른 공급가액, 법정 교육의 단가와 인원에 따른 공급가액과 특이사항이 기재된 메모가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D는 원고들로부터 해촉된 이후에도 수차례 LMS 홈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4) 피고 D는 E로 전직한 이후 원고 A의 고객사였던 V(갑 제26호증의 2의 하단 표 순번 2), W(같은 표 순번 4), X(같은 표 순번 16), Y(같은 표 순번 35)와 연락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교육수강 기관을 E로 변경하게 하였다.

(5) 원고들의 고객사 90곳(= 원고 A의 고객사 67곳 + 원고 B의 고객사 23곳) 중 64곳(= 원고 A의 고객사 55곳 + 원고 B의 고객사 9곳)이 피고들이 E로 전직한 이후 교육수강 기관을 변경하였다(갑 제26호증의 2의 하이라이트 부분과 같다).

나) 이 사건 제1 영업비밀 부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D가 2022. 9. 1.부터 2022. 9. 16.까지 Q 파일 및 R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 <각주7>을 전송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가 이메일을 통해 전송한 위 파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H 추적결과(갑 제17호증) 역시 피고 D가 이메일을 통해 전송한 위 파일들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민감정보에 이 사건 제1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2022. 9. 1.부터 2022. 9. 16.까지 Q 파일 및 R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을 전송한 행위가 이 사건 제1 영업비밀의 사용, 공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D가 Q 파일 및 R 파일을 전송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비밀유지 서약서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Q 파일 및 R 파일을 전송하여 이 사건 제1 영업비밀 중 피고 D가 담당한 회사들(갑 제26호증의 2 참조) 중에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90곳에 관한 부분을 사용하고, E로 전직한 이후에도 E 소속 직원으로서 원고들의 고객사와 연락하여 교육수강 기관을 변경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부분을 사용·공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 D의 행위는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제1 영업비밀은 피고들이 스스로 취득한 정보로서 원고들의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가 아니고 원고들이 피고 D가 이 사건 제1 영업비밀을 어떻게 취득하였다는 것인지를 전혀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D와의

위촉계약에 따라 교육서비스에 관한 영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 영업비밀을 할당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 D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인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D의 행위가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2 영업비밀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비밀유지 서약서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R 파일을 전송하여 이 사건 제2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 D의 행위는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D는 이 사건 제1 영업비밀 중 피고 D가 담당한 회사들(갑 제26호증의 2 참조) 중에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90곳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제2 영업비밀에 관하여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의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인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기존 고객사들을 상대로 법정의무교육, 위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이익 중 피고 D가 빼내어 간 고객들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을 수 없게 된 매출이익 상당의 수익이다. 법정의무교육 서비스의 경우 원고 A는 교육인원 1인당 129,360원, 원고 B는 교육인원 1인당 20,000원을 각 서비스 대가로 지급받았고, 고용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사들이 수강하여야 하는 교육은 최소 분기단위로 연 4회에 달하므로, 피고 D는 ① 원고 A에게 737,869,440원(= 1인당 교육비 129,360원 × 연 4회 × 55

곳 고객사의 총 교육인원 1,426명<각주8>), ② 원고 B에게 26,000,000원(= 1인당 교육비 20,000원 × 연 4회 × 9곳 고객사의 총 교육인원 325명<각주9>)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D에게 그 중 일부로서 ① 원고 A의 경우 124,000,000원, ② 원고 B의 경우 2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각주10>

2)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수량에 기초한 손해액의 추정으로서, 교육수강 기관 변경에 따라 원고들이 올릴 수 없게 된 매출액에는 교육서비스 제공에 따라 원고들이 지출하게 될 비용이 공제되어 있지 않아 위 매출액에 위 제14조의2 제1항 제1호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관이 선택하는 교육업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고 보이고, 원고들의 고객사 중 교육수강 기관을 변경한 64곳(갑 제9호증의 1과 갑 제26호증의 2의 하이라이트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변경 고객사’라 한다)이 과거 원고들로부터 장기간 교육을 수강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 D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 고객사가 계속해서 최소 1년간(연 4회) 원고들로부터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이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D가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통하여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① 원고 A의 경우 1억 원, ② 원고 B의 경우 360만 원으로 각 인정한다.

① 이 사건 변경 고객사는 모두 이미 원고들로부터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다

른 업체에 비하여 새로운 계약체결에 있어 유리한 환경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변경 고객사 모두가 피고 D가 해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최소 1년간(연 4회) 원고들로부터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상실한 매출액(원고 A 737,869,440원, 원고 B 26,000,000원)은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② 피고 D가 사용·공개한 이 사건 제1 영업비밀은 원고들이 장기간 스스로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을 통하여 축적한 고객정보로서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피고 D가 사용한 이 사건 제2 영업비밀 역시 원고들이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견적서로서 이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정보는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

③ 피고 D는 이 사건 비밀유지 서약서를 통해 수강생 모집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들로부터 해촉되기 직전 약 73MB에 이르는 R 파일과 약 786MB에 이르는 Q 파일 및 다수의 압축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반출하였다. R 파일과 Q 파일에는 이 사건 각 영업비밀 외에도 사실상 피고 D가 원고들의 영업사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얻은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④ 피고 D가 반출한 이 사건 제1 영업비밀이나 이 사건 제2 영업비밀이 모두 E에 제공되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고 D는 E로 전직한 이후 원고들의 고객사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변경 고객사들의 교육수강 기관을 변경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⑤ 나아가 피고 D는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이메일로 전송한 R 파일과 Q 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단지 폴더목록(을 제16호증)만을 제출하였다가(2023. 8. 30.자 서증), 원고들이 그 수정한 날짜와 용량 합계가 실제 전송된 날짜와 용량과 다르다는 점 등을 지적하자 이번에는 ‘이미 가공이 이루어져 해당 파일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2024. 12. 16.자 준비서면 5, 6쪽). 피고 D는 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거듭된 석명에 따라(2024. 12. 20. 3회 변론조서 참조) 결국 그 파일 전체를 제출하였으나, ‘최근에야 삭제한 파일이 컴퓨터 휴지통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등(2024. 12. 31.자 증거설명서, 서증) 그 동안 R 파일과 Q 파일을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소송의 경과 또한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1억 원, 원고 B에게 36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D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6. 10.부터 피고 D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용(재판장) 김수현 차현우

각주1: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의 위촉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와 달리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의 위촉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위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2: 원고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다가 피고들이 이를 지적하자 ‘영업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534)에서 영업비밀로 특정하여 별지로 제출하였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갑 제26호증의 1, 2로 제출하면서 이를 영업비밀로 특정한다고 주장하였다(2024. 12. 19.자 준비서면 8쪽 참조). 한편 피고들이 2024. 12. 31. ‘F’, ‘G’ 파일을 서증으로 제출한 이후 원고들은 갑 제26호증의 1, 2에 기재된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2025. 1. 17.자 준비서면 4쪽), 그 외에 새롭게 확인된 전적정보(갑 제27호증의 2, 3)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위 준비서면 13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이와 같이 특정한다[다만 위 준비서면 13쪽에서 주장한 ‘고객사별 수강생 개인정보’의 경우 원고들은 이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를 유출한 피고들의 행위가 ‘이 사건 비밀유지 서약서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앞선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위 준비서면 7쪽), ‘고객사별 수강생 개인정보’ 부분은 원고들이 특정한 영업비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각주3: 원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행위를 주로 ‘F’, ‘G’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한 유출행위로 특정하고 있으나(2025. 1. 17.자 준비서면,

2025. 1. 24.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들은 ‘피고들이 재직 중 이메일을 통해 E에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해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소장 3, 6쪽 참조) ‘정보유출내역’(갑 제5호증)을 제출하고, 중요 정보의 외부 유출을 감지하는 “H”라는 소프트웨어에 따른 피고들의 정보 유출 내역을 ‘H 추적결과’(갑 제17호증)로 제출하였으며, ‘F’, ‘G’ 파일 외에도 ‘3.사업자등록증.zip’, ‘1. 첨부자료.zip’, ‘9월개강.zip’ 파일 등 위 갑 제17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파일에도 원고들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므로(2025. 1. 17.자 준비서면 13쪽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와 같이 특정한다.

각주4: AA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국내 최대 기업정보 DB를 구축하여 유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각주5: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면 고객들의 정보와 수강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관리 홈페이지이다.

각주6: 나아가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참조), 설령 피고들이 위 정보 중 일부를 원고들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3.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방법, 이 사건 비밀유지 서약서에 따른 피고들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 원고들의 경쟁력 손상 위험과 현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각주7: 갑 제5, 17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9월개강.zip’, ‘1.첨부자료.zip’ 등의 파일을 의미한다. 다만, 갑 제5, 17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파일에는 피고들이 제출한 Q 파일 및 R 파일(을 제20, 21호증)의 폴더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과 제목이 동일한 파일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가령 갑 제5호증의 ‘S’ 등), 위 부분은 Q 파일 및 R 파일을 전송한 행위에 포함하여 함께 판단한다.

각주8: 갑 제9호증의 1 하단 표의 순번 1 내지 55의 교육인원을 모두 합한 숫자이다.

각주9: 갑 제9호증의 1 상단 표의 순번 1 내지 9의 교육인원을 모두 합한 숫자이다.

각주10: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하여만 이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여 주장하고 있다.

각주11: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만을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2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도 함께 산정한다.